

## 교직과정 이수 규정

제정 1998. 03. 01	개정 2000. 03. 01
개정 2001. 08. 01	개정 2003. 03. 01
개정 2007. 03. 01	개정 2009. 06. 01
개정 2010. 07. 16	개정 2010. 10. 01
개정 2011. 11. 01	개정 2013. 03. 01
개정 2014. 01. 28	개정 2014. 03. 31
개정 2015. 03. 01	개정 2015. 04. 07
개정 2016. 02. 04	개정 2017. 08. 28
개정 2019. 04.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범계 학과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전공의 학생이 중등교사 또는 유치원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유능한 자질을 함양하여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 3. 1)

제2조 (교직과정 설치)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 교직과정 설치 전공, 표시과목, 선발 인원, 적용학년도는 <별표1> 과 같다.

제3조 (교직과정 이수 신청) ① 사범계 학과에 입학한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1학년 1학기부터 <별표2>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전공)에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2학년 1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교직교육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5. 4. 7, 개정 2016. 2. 4, 개정 2017. 8. 28, 개정 2019. 4. 29)

1.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에 <별표2>의 교직과목을 3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3. 3. 1)

2. 학사경고가 1학년 1, 2학기 중에 있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다. (신설 2013. 3. 1)

③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장(교직교육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5. 4. 7, 개정 2016. 2. 4, 개정 2017. 8. 28)

④ 교무처장(교직교육센터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5. 4. 7, 개정 2016. 2. 4, 개정 2017. 8. 28)

제4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이하 ‘이수예정자’) 선발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1)

1. 2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서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에 교직과목을 3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한 자

3. 근신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중 인성·적성·자질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장 및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

4. 교직 적성검사 또는 인성검사에 의해 교직에 적합한 자로 인정을 받은 자 (개정 2013. 3. 1)

5. 편(재)입학생은 교직선발 인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으로 한다.

②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에 당해 학년에 승인된 교직선발 인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앞의 ①항에 해당하는 지원자 수가 이를 초과할 때는 전공 및 교직과목의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 평균평점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이때 선발하는 학기의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성적 정정에 의한 성적은 반영한다. 동점자인 경우는 이수예정자로 모두 선발하되, 3학년 말에 그 동점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3. 3. 1)

1.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3개 학기 동안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평점이 높은 자
2.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개 학기간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의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3.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개 학기간 총 이수 평균평점이 높은 자

③ 우리 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한 학년 및 전공에 재·편입학하였을 때는 교직선발 인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기존 또는 전적학교의 이수학점을 인정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교직복수전공의 이수예정자 선발은 사범계 학과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 교직과정 설치 학과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순은 ②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학부(과)로 통보하고, 이를 학부(과)에서는 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수 학점 및 성적 요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학점 및 성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1)

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개정 2013. 3. 1)

1. <별표2>의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2학점 등 총 20학점 이상 (신설 2013. 3. 1)
2. 전공과목은 <별표3>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중 5과목 1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단, 중등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 42학점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 30학점 포함하여 72학점 이상 (신설 2013. 3. 1)
3.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사범계 학과는 제외) (신설 2013. 3. 1)

②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입학자(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편입자 포함) (개정 2013. 3. 1)

1. <별표2>의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등 총 22학점 이상 (신설 2013. 3. 1, 개정 2016. 2. 4)
2. 전공과목은 <별표3>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별표2>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50학점 이상. 단, 중등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 42학점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 (신설 2013. 3. 1, 개정 2016. 2. 4)
3.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신설 2013. 3. 1)
4. 교직적성검사 또는 인성검사 1회 통과 (신설 2013. 3. 1)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개정 2013. 3. 1)

1. <별표2>의 ‘교직과목’ 중 중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등 총 22학점 이상 (신설 2013. 3. 1, 개정 2016. 2. 4)
2. 전공과목은 <별표3>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별표2>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50학점 이상. 단, 중등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 42학점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 38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을 포

합하여 8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호학과는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을 제외하고 간호학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다. (신설 2013. 3. 1, 개정 2014. 1. 28, 개정 2016. 2. 4)

3.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신설 2013. 3. 1)

4.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신설 2013. 3. 1)

5. 교직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2회 통과 (신설 2013. 3. 1)

가. 적격판정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교육센터에서 실시한 교직적성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4. 29)

나. 검사도구와 판정기준은 다음의 검사기준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 4. 29)

(1) 검사도구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른 도구(김정환 외) 또는 다면적인성검사(MMP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의 사용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 4. 29)

(2) 적격판정기준은 교육부 안내 도구인 '교직적성인성검사'(김정환 외)의 경우 14개 요인에 대해 영역별 Z 점수를 산정하여 -2.0미만을 cut-off로 설정한다. 또한 다면적인성검사(MMPI)의 경우 표준화 검사 매뉴얼과 교원양성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위원의 판정에 따른다. (신설 2019. 4. 29)

(3) 불합격자의 경우 그 정도의 심각성을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학생상담센터 및 교수학습센터의 추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불합격자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지도교수의 상담 및 재검사를 통해 합격처리한다. (신설 2019. 4. 29)

④ 공업계 이수예정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하여야 한다.

⑤ 간호학과는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2016년 3월 1일 현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가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4)

1. 실습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대학 및 교직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9)

가. 대학은 학과 및 학년별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되, 학생별 교육기회는 1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4. 29)

나. 부득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외부의 공공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내용과 시간은 우리대학 기준을 준용하며, 학생이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로 인정한다. (신설 2019. 4. 29)

2. 강사는 교직교육센터장이 위촉하되, 강사의 자격은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다. (신설 2019. 4. 29)

3. 교육내용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며,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을 수료로 인정한다. (신설 2019. 4. 29)

4. 교육이수자는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교직자격조건에 이수일자 및 시간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9. 4. 29)

제6조 (복수전공 이수) ①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한 경우와 사범계열 학생이 사범계열 타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한 경우 복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사범계열 포함)는 복수전공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50학점(기본이수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중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자는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및 표시과목(국어) 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총 8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부전공 이수) 삭제 <개정 2009. 6. 1>

제8조 (교육실습) ① 학교(유치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유치원, 중등·특수학교에서 직접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의 교육실습을 4주 이상 실시하며, 2학점 이상으로 2-0-4주 또는 2-1-4주로 운영하고, 대학에서의 이론수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학점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실습기관이 부여하는 평가점수의 비율을 총점의 50%이상으로 하고, 보건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은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유치원)현장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9. 4. 29)

②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의 교육실습은 제1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실시하며, 유치원정교사(2급), 특수학교정교사(2급)의 경우에는 교과특성상 복수전공 자격별로 각각 교육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봉사활동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의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1학년부터 졸업시까지 누적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인정은 4학년 2학기에 P/N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2. 4, 개정 2019. 4. 29)

④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학과(지도교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승인하면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사전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에 날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학생은 계획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교육봉사활동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받아 누적 관리하고, 4학년 2학기 기말시험 전에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 4. 29)

⑤ 지도교수는 교육봉사활동의 진위와 60시간 이상의 시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학점을 P/N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9. 4. 29)

⑥ 교육봉사활동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기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9)

제9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교원자격 이수예정자는 4학년 2학기 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성적증명서, 그리고 간호학과는 간호사면허증 사본과 함께 교무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개정 2017. 8. 28)

제10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 및 학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적용된 제3조, 제5조, 제8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 (개정 2013. 3. 1, 개정 2014. 1. 28, 개정 2015. 3. 1)

교직과정 설치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 인원	적용입학년도
학부(과)	전 공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	136	2003학년도부터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20	2006학년도부터
의료보건학부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20	2013학년도부터

<별표 2> 교직과목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영역	과 목 명	학 점	개설학년-학기	최소이수학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2-0	2-1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2-1		
	교육심리학	2-2-0	2-2		
	교육사회학	2-2-0	2-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2-0	3-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3-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4-1		
교과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	2-2-0	3-2	4학점이상 (2과목이상)	*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교과교육론	2-2-0	3-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3-2		
교육실습	교육실습	2-0-4주	4-1	2학점 (4주)	

\* 2012학년도부터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은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음.

■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입학자(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편입자 포함) (개정 2015. 3. 1)

영역	과 목 명	학 점	개설학년-학기	최소이수학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2-0	1-2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교육학개론을 사범계열 학과는 1학년-1학기에 개설한다.
	교육심리학	2-2-0	1-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2-1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2-0	2-1		
	교육사회학	2-2-0	2-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3-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4-1		
	생활지도와 상담	2-2-0	4-1		
	교사론	2-2-0	4-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2-0	2-1	4학점	
	교직실무	2-2-0	3-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0-4주	4-1	4학점	*교육봉사활동 재수강은 1학기에 개설 가능
	교육봉사활동	2-0-60시간	4-2(1)		
교과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	3-3-0	2-2	8학점이상 (3과목이상)	*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지도 -교과논리 및 논술지도 -유아논리 및 논술지도 -국어논리 및 논술지도
	○○교과교육론	3-3-0	3-1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3-2		



■ 2013학년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개정 2013. 3. 1, 개정 2014. 1. 28, 개정 2015. 3. 1, 개정 2016. 2. 4, 개정 2019. 4. 29)

영역	과 목 명	학 점	개설학년-학기	최소이수학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2-0	1-2	12학점이상 (6과목이상)	*교육학개론을 사범계열 학과는 1학년-1학기에 개설한다.
	교육심리학	2-2-0	1-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2-1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2-0	2-1		
	교육사회학	2-2-0	2-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3-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4-1		
	생활지도와 상담	2-2-0	4-1		
	교사론	2-2-0	4-2		
	교육제도 및 교육법	2-2-0	4-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2-0	2-1	6학점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2-0	4-1		
	교직실무	2-2-0	3-1		
교육실습	학교(유치원)현장실습	2-0-4주	4-1	4학점	*교육봉사활동 재수강은 1학기에 개설 가능
	교육봉사활동	2-0-60시간	4-2(1)		
교과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2-2	8학점이상 (3과목이상)	*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지도 -논리 및 논술지도 -유아논리 및 논술지도 -국어논리 및 논술지도
		3-3-0	3-1		
		2-2-0	3-2		

- \* 각 교과목의 학점 및 개설 학년과 학기는 학과에 따라 교무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 \* 간호학과는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는다.
-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이론영역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의 이해,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 2017학년도 입학자 이후 (개정 2013. 3. 1, 개정 2014. 1. 28, 개정 2015. 3. 1, 개정 2016. 2. 4, 개정 2019. 4. 29)

영역	과 목 명	학 점	개설 학년-학기	최소이수학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2-0	1-2	12학점이상 (6과목이상)	*교육학개론을 사범계열 학과는 1학년-1학기에 개설한다.
	교육심리	2-2-0	1-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2-1		
	교육과정	2-2-0	2-1		
	교육사회	2-2-0	2-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3-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4-1		
	생활지도 및 상담	2-2-0	4-1		
	교사론	2-2-0	4-2		
	교육제도 및 교육법	2-2-0	4-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2-0	2-1	6학점	*특수교육학개론은 영재교육영역(단원)을 포함한다.
	교직실무	2-2-0	3-1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2-0	4-1		
교육실습	학교(유치원)현장실습	2-0-4주 또는 2-1-4주	4-1	4학점	*학교현장실습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2-0-4주 또는 2-1-4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	2-0-60시간	4-2(1)		*교육봉사활동 재수강은 1학기에 개설 가능
교과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3-3-0 2-2-0	2-2	8학점이상 (3과목이상)	*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지도 -논리 및 논술지도 -유아논리 및 논술지도 -국어논리 및 논술지도
			3-1		
			3-2		
			3-2		

\* 각 교과목의 학점 및 개설 학년과 학기는 학과에 따라 교무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 간호학과는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않는다.

## 〈별표 3〉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개정 2013. 3. 1, 개정 2015. 3. 1)

□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표

학과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해 당 과 목				비고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 습	
중 등 특 수 교 육 과	국어	국어학개론	전필	1/2	국어학개론	3-3-0	5과목 14학점 이상
		국어문법론	전필	2/1	한국어문법론	3-3-0	
		국어사	전필	2/2	한국어사	3-3-0	
		국문학개론	전필	1/1	한국문학개론	3-3-0	
		문학교육론	전필	2/2	한국문학사	3-3-0	

## ■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개정 2013. 3. 1, 개정 2015. 3. 1)

□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표

학과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해 당 과 목				비고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 습	
중 등 특 수 교 육 과	국어	국어교육론	전필	3/1	국어교육론	3-3-0	7과목 21학점 이상
		국어학개론	전필	1/2	국어학개론	3-3-0	
		국어문법론	전필	2/1	한국어문법론	3-3-0	
		국어사	전필	2/2	한국어사	3-3-0	
		국문학개론	전필	1/1	한국문학개론	3-3-0	
		문학교육론	전필	2/1	문학교육론	3-3-0	
		의사소통교육론	전필	3/2	한국어표현교육법	3-3-0	
			전선	3/1	한국어이해교육법	3-3-0	
국문학사	전선	3/2	한국문학사	3-3-0			

■ 2018학년도 입학자(2020학년도 편입자 포함)까지 (신설 2013. 3. 1, 개정 2016. 2. 4)

□ 유치원 정교사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표

학과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해 당 과 목				비고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 습	
유 아 교 육 과	-	유아교육론	전필	1/1	유아교육론	3-3-0	7과목 21학점 이상
		영유아발달과 교육	전필	1/1	영유아발달과 교육	3-3-0	
		유아교육과정	전필	3/1	유아교육과정	3-3-0	
		아동복지	전필	4/1	아동복지	3-3-0	
		유아음악교육	전선	1/1	유아음악교육	3-3-0	
		유아미술교육	전선	1/2	유아미술교육	3-3-0	
		유아사회교육	전선	2/2	유아사회교육	3-3-0	
		유아과학교육	전선	2/2	유아과학교육	3-3-0	
		유아동작교육	전선	2/2	유아동작교육	3-3-0	
		유아놀이지도	전선	2/2	유아놀이지도	3-3-0	
		유아관찰 및 실습	전선	2/2	유아관찰 및 실습	3-3-0	
		유아언어교육	전선	3/1	유아언어교육	2-2-0	
		유아건강교육	전선	3/1	유아건강교육	3-3-0	
		유아수학교육	전선	3/2	유아수학교육	3-3-0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전선	4/1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3-0	
		유아교사론	전선	4/2	교사론	3-3-0	
유아안전교육	전선	3/2	유아안전교육	3-3-0			

\* “유아안전교육” 교과목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 2019학년도 입학자(2021학년도 편입자 포함)부터 (신설 2019. 4. 29)

□ 유치원 정교사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표

학과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해 당 과 목				비고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 습	
유 아 교 육 과	-	유아교육론	전필	1/1	유아교육론	3-3-0	7과목 21학점 이상
		유아미술교육	전선	1/1	유아미술교육	3-3-0	
		영유아발달과 교육	전필	1/2	영유아발달과 교육	3-3-0	
		유아사회교육	전필	2/1	유아사회교육	3-3-0	
		유아음악교육	전선	2/1	유아음악교육	3-3-0	
		유아과학교육	전선	2/2	유아과학교육	3-3-0	
		유아교육과정	전선	3/1	유아교육과정	3-3-0	
		유아언어교육	전선	3/1	유아언어교육	3-3-0	
		유아수학교육	전선	3/2	유아수학교육	3-3-0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전선	4/2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3-0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설 2014. 1. 28)

□ 보건교사(2급)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표

학과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해 당 과 목				비고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 습	
간 호 학 과	-	간호관리학	전필	4/1	간호관리학 1	2-2-0	7과목 21학점 이상
		기본간호학	전필	2/1	기본간호학 1	2-2-0	
		아동간호학 및 실습	전필	2/2	아동간호학 1	2-2-0	
			전필	3/1	아동간호학 실습 1	1-0-3	
		성인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아동간호학 실습 2	1-0-3	
			전필	2/2	성인간호학 1	3-3-0	
		정신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성인간호학 실습 1	1-0-3	
			전필	3/1	성인간호학 실습 2	1-0-3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정신간호학 1	2-2-0	
			전필	4/1	정신간호학 실습1	1-0-3	
			전필	4/1	정신간호학 실습2	1-0-3	
		모성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지역사회간호학 1	2-2-0	
			전필	4/1	지역사회간호학 실습1	1-0-3	
			전필	4/1	지역사회간호학 실습2	1-0-3	
		전필	2/2	모성간호학 1	2-2-0		
전필	3/1	모성간호학 실습1	1-0-3				
전필	3/1	모성간호학 실습2	1-0-3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설 2014. 1. 28, 개정 2015. 01. 28)

□ 보건교사(2급)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표

학과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해 당 과 목				비고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 습	
간 호 학 과	-	기본간호학	전필	2/1	기본간호학 I	2-2-0	7과목 21학점 이상
		성인간호학 및 실습	전필	2/2	성인간호학 I	3-3-0	
			전필	3/1	성인간호학실습 I	1-0-3	
		아동건강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성인간호학실습 II	1-0-3	
			전필	2/2	아동건강간호학 I	2-2-0	
		여성건강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아동건강간호학실습 I	1-0-3	
			전필	3/1	아동건강간호학실습 II	1-0-3	
		정신건강간호학 및 실습	전필	2/2	여성건강간호학 I	2-2-0	
			전필	3/2	여성건강간호학실습 I	1-0-3	
			전필	3/2	여성건강간호학실습 II	1-0-3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정신건강간호학 I	2-2-0	
			전필	4/1	정신건강간호학실습 I	1-0-3	
		간호관리학	전필	4/1	정신건강간호학실습 II	1-0-3	
			전필	3/2	지역사회간호학 I	2-2-0	
		전필	4/2	지역사회간호학실습 I	1-0-3		
전필	4/2	지역사회간호학실습 II	1-0-3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설 2014. 1. 28, 개정 2015. 01. 28, 개정 2017. 01. 28)

□ 보건교사(2급)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표

학과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해 당 과 목				비고
			구분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학점-이론-실 습	
간 호 학 과	-	기본간호학	전필	2/1	기본간호학 I	2-2-0	7과목 21학점 이상
		성인간호학 및 실습	전필	2/2	성인간호학 I	3-3-0	
			전필	3/1	성인간호학실습 I	2-0-6	
		아동건강간호학 및 실습	전필	2/2	아동건강간호학 I	2-2-0	
			전필	3/1	아동건강간호학실습	2-0-6	
		여성건강간호학 및 실습	전필	2/2	여성건강간호학 I	2-2-0	
			전필	3/2	여성건강간호학실습	2-0-6	
		정신건강간호학 및 실습	전필	3/1	정신건강간호학 I	2-2-0	
			전필	4/1	정신건강간호학실습	3-0-9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전필	3/2	지역사회간호학 I	2-2-0	
전필	4/2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0-6			
간호관리학	전필	4/1	간호관리학 I	2-2-0			

〈별지 제1호 서식〉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학 부 (과)	
전 공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
3. 경동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함.

년 월 일

학 부 모 (인)

신 청 자 (인)

교직과정 주임교수	학부(과)장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













## 교육봉사활동 사전동의서



학 생 정 보						
성 명		대학		학과		학번
교육봉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집 주 소	우편번호)					
개인연락처				e-mail주소		

교 육 봉 사 활 동 기 관 정 보			
기 관 명		대표자명	
기관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교육봉사활동 내용			

위 학생이 본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 동 대 학 교 교 무 처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4. 29)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신청자	학 과			
	학 번			
	이 름			
교육봉사활동 실적내용				
봉사기간	봉사시수	봉사기관	교육봉사활동 내용	증빙자료번호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총 교육시간	시간			
평가 결과(60시간 이상 충족 여부)				P / N
첨 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을 신청한 학생의 교육봉사활동 실적을 확인하고, 최종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b>경동대학교 교무처장 귀하</b>				